

[별지 제15호의3 서식] 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자동화평가 재산출 요청
(제40조의5제1항 관련)

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자동화평가 재산출 요청(제40조의5제1항 관련)

1. 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개인신용평가 결과 재산출 요청 제도 안내

당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자동화평가 결과,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및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를 설명하고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정정·삭제 및 수정된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화평가 결과를 재산출하여 줄 것을 당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초정보가 당사가 직접 수집한 정보가 아니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수집한 타 금융회사의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정정·삭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2. 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자동화평가 결과 재산출 요청

_____는(은) 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자동화평가 결과 재산출과 관련하여 귀사의 설명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기초정보 중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닌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합니다.

구 분	현행 정보	정정 또는 삭제 내용
식별정보		
거래내용 판단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기타 정보		

3. 다음과 같이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본란 삭제)

정보명	세부 내용
건강보험 납부실적	'xx년 x월 x일~'◇◇년 ◇월 ◇일까지 연체없이 납부
이하 생략	이하 생략

4. 상기 오류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고, 수정된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재산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 붙임 : 증빙자료

20 . . .

_____ (서명 / 인)